일자리 기여	_개

등록번호	재난예방과-3499
등록일자	2023. 3. 28.
결재일자	2023. 3. 28.
공개구분	대국민 공개

경기도

소방위	예방대책팀장	재난예방과장	평택소방서장
원승재	박병준	장순정	2023. 3. 28. 김승남
협 조			

제24회 경기도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 운영 계획

경기도소방
평택소방서

제24회 경기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운영 계획

Ⅰ 관련근거

○ 생활안전담당관-3268(2023.3.21.)호「제24회 경기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일정알림」

Ⅱ 운영배경

○ 코로나19 안정세에 따른 각종 행사 정상화로 대면 경연 진행

○ 미래 주역인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조기 소방안전문화 확산

Ⅲ 대회개요

○ **(대 회 명)** 「제24회 경기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」

○ **(참가대상)** 평택시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

※ **단체(시·군·구) 소속 합창단은 참가 제한**

○ **(대회부문)** 초등부, 유치부 2개 부문

○ **(운영일정)**

참가 접수 (3. 27. ~ 4. 12.)	**평택소방서 담당자 메일로 접수**
⇩	
자체 예선 심사 (4. 14.)	**유치부, 초등부 최우수 각 1팀씩 선발 (비대면 영상으로 경쟁심사)** **※ 분야별 최우수팀 – 道 경연대회 출전**
⇩	
경기도 대회 (6. 1.)	**각 서 부문별 최우수팀 출전 - 道 주관 심사** **※ 道 심사 결과 각 부문별 최우수상 수상팀 – 전국대회 출전**
⇩	
전국 대회 (미정)	**소방청 주관 심사**

Ⅳ 세부계획

○ **(참가방식)** 각 부문별 자체 심사를 통한 1팀 선발 참가

- **자체예선** : 비대면 영상 심사를 통한 대상 선정
  · 참가팀별 공연영상 제출(5분이내)
  · 담당자 이메일 접수 : 소방위 원승재(wsj3827@gg.go.kr)
- **道 대회 및 전국대회** : 각 부문별 서 대표 출전팀 무대 경연

○ **(참 가 곡)** 소방동요 및 자유곡(퍼포먼스가 가미된 무대구성 가능)

- **유치부** : 소방동요집 1집 ~ 7집(151곡) 중 선택(창작ㆍ편곡 가능)
- **초등부** : 자유곡(소방동요, 만화주제곡, 트로트, K-pop, 힙합 등 장르 불문)

※ (가점) 소방과 안전에 대한 명확한 주제 표현, (감점) 지적 제산권 침해 시

○ **(공연시간)** 무대 공연 시간 5분이내로 제한

- 소방동요집 음원 및 MR 제공(한국119소년단 홈페이지 / 자료실)

○ **(참가기준)**

- **유치부** : 유아교육법 제7조(유치원), 영유아보육법 제10조(어린이집)
- **초등부** : 초·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(초등학교)

○ **(인원구성)** 팀별 15명~30명으로 제한

○ **(道 대회 시 감점사항)**

- 최대 참가인원 초과 또는 미달 시
- 지도교사 1명만 지휘 가능(2명 이상인 경우 감점)
- 안전수칙 및 방역지침 준수(위반시 감점)
- 입·퇴장 시 인사 퍼포먼스를 하는 행위(1~2명이 손 흔드는 개인행동 허용)
- MR 진행 이외의 시간에 기타 행동 행위
- 지도교사가 아닌 제3자가 출전팀을 지휘하는 경우

Ⅴ 자체 예선심사 계획 (별도 계획 수립)

○ **(접수기간)** 2023. 4. 12.(수) 18:00까지

○ **(심사일시)** 2023. 4. 14.(금)

○ **(장　　소)** 평택소방서 2층 소회의실

○ **(심사위원)** 3명(중등부 음악교사 2명, 예방대책팀장)

○ **(심사기준)** 가창력 40%, 창의성 20%, 작품성 20%, 표현력 20%

구분	배점율(%)	심사내용
가창력	40	■ 음정, 박자의 정확성, 가사 전달력, 화음 조화
창의성	20	■ 연습 과정 포함 스토리텔링, 퍼포먼스 참신성
작품성	20	■ 동요와 율동 어울림, 소품 안무 적정성, 흥미 유발성
표현력	20	■ 노래의 분위기에 맞는 표정, 몰입성, 완성도

○ **(순위결정)**

- 심사위원 종합평점의 고득점 순위로 결정
- 단, 동점 시 미 감점팀, 가창력 고득점 순으로 결정

○ **(평가결과)** 각 부문별 최우수 1팀씩 선정 → 道대회 출전

※ 각 부문별 단독 접수 시 자체예선 없이 道 대회 출전팀으로 선발

○ **(道대회 출전 팀 선발)** '23.4.19.까지 참가신청서 및 명단 본부제출

Ⅵ 홍보계획

○ 평택교육지원청, 초등학교 등 대회 안내 공문 발송

○ 언론매체, 소방서 홈페이지, SNS를 활용 홍보

붙임 1. 참가자격 관련규정(유아교육법, 영유아 보육법 초등교육법) 1부.

2. 제24회 소방동요 경연대회 참가 신청서 및 명단 1부. 끝.

참고1 유치원생 판단 관련 규정

《유치원생》

유아교육법 제7조(유치원의 구분)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 <개정 2010. 3. 24.>

1. 국립유치원 : 국가가 설립·경영하는 유치원
2. 공립유치원 :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경영하는 유치원(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)
3. 사립유치원 : 법인 또는 사인(私人)이 설립·경영하는 유치원

영유아보육법 제10조(어린이집의 종류)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공립어린이집 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2.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: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(이하 “사회복지법인”이라 한다)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3. 법인·단체등어린이집: 각종 법인(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)이나 단체 등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
4. 직장어린이집 :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(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)
5. 가정어린이집 :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6. 협동어린이집 :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(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)을 결성하여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7. 민간어린이집 :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

참고2 초등학생 판단 관련 규정

《초등학생》

초·중등교육법 제2조(학교의 종류) 초、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
2. 중학교、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、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초·중등교육법 제3조(국립 · 공립 · 사립 학교의 구분) 제2조 각 호의 학교(이하 “학교”라 한다)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<개정 2013. 12. 30.>

1. 국립학교: 국가가 설립、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
2. 공립학교: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、경영하는 학교(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、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)
3. 사립학교: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、경영하는 학교(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)